

부산지방법원 2022. 4. 13 선고 2021나4213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기술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, 담당변호사 김수정

피고, 피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헌, 담당변호사 권승형

변 론 종 결 2022. 3. 16.

판 결 선 고 2022. 4. 13.

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. 1. 14. 선고 2019가단222258 판결

주 문

1.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
가.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. 10. 21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

나. 피고는 B에게 위 가.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16. 10. 24. 접수 제205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주문 제1항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6. 7. 12. B에게, 보증상대방 : 주식회사 C(이하 'C'), 보증원금 : 85,000,000원(보증서번호 : E) 및 170,000,000원(보증서번호 : F), 보증기한 : 각 2017. 7. 12., 대출과목 : 일반자금대출로 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, 이에 B는 C으로부터 1억 원(보증서번호 : E)과 2억 원(보증서번호 : F) 등 합계 3억 원을 차용하였다.

나. B가 2017. 1. 25. 폐업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, 이에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7. 4. 10. C에 합계 255,686,823원을 대위변제하였다.

다.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7. 8. 3. B는 원고에게 191,795,395원 및 그 중 191,739,08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고(부산지방법원 2017차전18742호), 2017. 8. 22.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라. 한편 B는 2016. 10. 21. 장모인 피고와 사이에 주문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)을 대금 92,580,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(이하 '이 사건 처분행위')을 체결하고,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16. 10. 24. 접수 제20562호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등기')를 경료하여 주었다.

[인정근거 : 다툼 없는 사실, 갑1 내지 9호증, 을1 내지 3호증, 변론전체의 취지]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처분행위가 이루어질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, 위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발생되어 있었던 점,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남짓이 지난 이후인 2017. 1. 25. 위

각 신용보증계약 소정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처분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것이고, 실제로 원고가 2017. 4. 10. B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,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

(1)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사해성 유무, 즉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초래됐거나 심화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,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,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.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,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(대법원 2005. 1. 28. 선고 2004다58963 판결, 대법원 2006. 2. 10.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).

(2) B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, 적극재산으로 92,580,00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734,906,000원 상당의 부산 강서구 D 토지 및 지상 건물 및 158,693,854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, 소극재산으로 C에 대하여 963,462,205원의 채무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85,250,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, 을8호증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이 법원의 경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B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, 적극재산으로 G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금반환청구권 10,000,000원, 주식회사 H 분양대금

반환청구권 43,852,437원을 보유하고 있었고, 소극재산으로 13,065,080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(3)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

원고는 G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금반환청구권 10,000,000원, 주식회사 H 분양대금 반환청구권 43,852,437원은 입금 당일 곧바로 대체로 송금되는 사정에 비추어 B의 적극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와 을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B가 위 각 금원으로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(4)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

(가) I회사, J회사 각 보험해약환급금, K 공제해약환급금

피고는 위 각 해약환급금 채권도 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, I회사 보험해약환급금은 2016. 10. 26., K 공제해약환급금은 2016. 11. 4., J회사 보험해약환급금은 2016. 12. 22. 각 B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해약환급금의 입금 직후 위 금액 이상으로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된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, 위 각 환급금은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.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(나) 개인연금해지환급금 채권에 대한 판단

피고는 B의 개인연금해지환급금 채권도 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,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.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.

(다) 매출채권에 대한 판단

피고는 B의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의 미회수매출채권도 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, 2016. 10. 31.부터 2016. 12. 15.까지 사이에 L회사 등으로부터 합계 40,821,120원 상당의 금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입금 직후 위 금액 이상으로 M회사 등에게 지급이 이루어진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, 위 매출채권도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.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.

(라) 유체동산에 관한 판단

피고는 차량운반구, 기계장치, 공구와 기구, 비품 등 247,776,296원¹⁾ 상당도 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 을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2015년도 재무제표에 2015. 12. 31. 기준 유형자산으로 차량운반구 25,349,024원, 기계장치 170,500,000원, 공구와 기구 29,630,000원, 비품 22,297,270원 등 합계 247,776,294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에도 위 비품 등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위 비품 등이 B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, 결국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비품 등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.

(마) 세금에 관한 판단

피고는 2016. 11. 21. 경산세무서에 세금 13,065,08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소극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위 세금 중 일부를 환급받았으므로, 환급받은 부분은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, 2017. 2. 17. 5,958,330원이 국세환급금으로 B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B가 2016. 11. 21. 북부산세무서에 합계 78,497,980원의 세금을 납부한 사실²⁾을 인정할 수 있는바,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환급금이 경산세무서 관련 세금에 대한 환급금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(설령 위 환급금이 경산세무서 관련 세금으로 보아 이를 B의 소극재산에서 제외하더라도, B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에는 영향이 없다)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(5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B의 적극재산은 합계 1,040,032,291원이나 소극재산은 1,061,777,285원에 달해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, B가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B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,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.

다. 피고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B의 사업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,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채무자의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,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바(대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),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는 B의 장모인 점,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B의 사업이 어려워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점³⁾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.

라.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

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B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,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,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, 이를 취소하고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서호원, 판사 이은명, 판사 정일예

별지 목록

1. 경상북도 청도군

대 530㎡

2. 경상북도 청도군

[도로명주소] 경상북도 청도군

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위성글지붕 단독주택, 창고 및 화장실

1층 68.07㎡ 2층 52.31㎡

3. 경상북도 청도군

답 403㎡

4. 경상북도 청도군

답 515㎡

-이상 소유자 -

- 1) 오기로 보이거나 그대로 설시한다.
- 2) 위 금액 합계 78,497,980원도 B의 소극재산으로 보이거나 이에 대한 주장이 없다.
- 3) 2019. 10. 25.자 답변서 참조